

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

1.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: 미추홀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담당 부서(일자리정책과)
2.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
 - 정보제공 범위 :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일 현재 신청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
 - 사용목적
 -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
3. 금융거래조회기간 : 202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
4.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

공공근로 신청 일	신청자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동의확인
2026. . . .	본인		-	(인)
			-	(인)
			-	(인)

5. 정보제공 금융기관명
 - 한국은행 · 한국산업은행 · 한국수출입은행 · 중소기업은행
 - 「은행법」에 따른 금융기관 : 신한은행, 우리은행, SC제일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외환은행, 한국씨티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광주은행, 제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 등
 - 「장기신용은행법」에 따른 장기신용은행
 - 「단기금융업법」에 따른 단기금융회사
 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· 투자중개업자 · 집합투자업자 · 신탁업자 · 증권금융회사 ·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
 -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
 -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
 -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
 - 「축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
 - 「인삼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
 -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
 -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
 -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-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 - 그 밖에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

※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.
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,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데 동의합니다.

2026 년 월 일

미추홀구청장(일자리정책과) 귀하

- ※ 참고사항 : ○ 본 동의서는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.
 ○ 공공근로사업 담당부서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과 같습니다.
 ○ 동의 확인: 자필서명(인감 포함)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.